

'92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承認(案)

1. 提案事由

- 공공용지 부지확보
- 소규모 사유지 점용자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

2. 法的根據

- 지방재정법 제77조 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 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지방자치법 제35조 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 -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 - 6 호 :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3. 主要內容

- 매각 재산 (추가분)
 - 필지수 : 9
 - 면 적 : 2,147.3 m²
 - 매각 추정금액 : 271,809 천원
- 매입 재산 (추가분)
 - 필지수 : 5 (건물 2동 별도)
 - 면 적

[	건 물 : 171.31 m ² 토 지 : 18,776.20 m ²
---	---
 - 매입 추정금액 : 390,750 천원 (토지 347,750 건물 43,000)